

[금리인하요구권제도 시행 안내문]

1.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?

- ▶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다만, 보험계약대출, 집단대출, 리스, 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가능

2. 금리인하 적용대상

- ▶ 차주(가계기업) 및 대출종류(신용·담보대출)등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

3. 금리인하 행사(청구)요건

- ▶ 금리인하요구제도는 행사(청구)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▶ (가계대출) 취업 등 직장변동, 승진, 신용등급 개선, 우수고객선정, 소득증가, 전문자격증 취득, 재산증가 등
 - ▶ (기업대출) 재무상태개선, 회사채등급상승, 특허취득, 담보제공등

4. 신청방법

- ▶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.

5. 신청시기 및 횟수

- ▶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능하며, 연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횟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6. 심사 및 통보

- ▶ 개별저축은행에서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.

단, 은행의 내부정책 및 CSS(개인신용평가시스템)평가결과 등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